



본고는 민원인, 관련 단체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령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질의하여 회신한 주요 사례들 중에서 닭고기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

본 내용은 회신 당시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회신된 내용이므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,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, 축산물의 표시기준, 기타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따라서 관련규정의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자를 표기했으니 본 질의·응답집의 질의회신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닭내장의 폐기물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

질의 닭내장은 식품인가요? 아니면 폐기물인가요?

회신일) 2011. 06. 08.

회신내용)

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'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, 정육, 내장,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'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닭 내장의 경우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은 식품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.

다만,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폐기처분하고자 한다면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※출처 : 축산물위생관리법 질의·응답집